

DRB윤리강령 실천지침

제 1 장. 총 칙

1. 목 적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은 DRB의 구성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강령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3. 적용대상

본 실천지침은 DRB에 재직중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구성원의 자세

1. 성실한 업무수행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이해상충의 해결

2.1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상충으로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2 구성원은 이해상충과 관련된 사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사규

- 취업규칙
- 인사관리절차서
- 보안관리지침서

제 3 장.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의 준수

구성원은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국내, 외 법률 및 회사 방침과 사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법경영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실천지침의 운영

1. 책 임

- 1.1 모든 구성원들은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감사팀에 질의, 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1.2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2. 위반 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

- 2.1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나 감사팀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2.2 구성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부 칙

1. 시행일

본 실천지침은 2016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위반에 대한 조치

본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은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